

서울신학대학교 생활관 규정

[전문개정 2017.11.23.]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생활관의 명칭은 “서울신학대학교 생활관”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 생활관의 경건훈련, 면학,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구분) 본 생활관은 남자생활관, 여자생활관, 대학원생활관으로 구분한다.

제2장 조직

제4조(교직원) 생활관장, 남부관장, 여부관장, 행정조교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교직원의 임무) ①생활관장은 생활관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관장은 경건훈련, 신앙 및 생활지도, 학생상담 등을 담당한다.

③행정조교는 행정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학생자치회) ①생활관 학생 대표 기구로서 각 생활관별 학생장, 교구장(총장) 등을 둘 수 있다.

②임원들은 매일 23:00에 인원점검, 수칙집행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입사생들의 편의를 돕는다.

제7조(생활관 회의) 관장단과 임원진은 매주 1회 운영회의를 통하여 입사생들의 생활관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

제3장 경건훈련

제8조(경건훈련의 의무) 생활관 입사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1. 매주 화요일 ~ 금요일 6시 새벽예배에 참석한다.
2. 매주 1회 구역예배에 참석한다.
3. 매월 1회 영성집회에 참석한다.
4. 생활관에 처음 입사하는 신입사자들은 해당 신입학기에 소정의 영성지도를 받아야 한다.
5. 그 외 생활관에서 이루어지는 영성훈련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4장 입사 및 퇴사

제9조(입사 자격)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소정의 입사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10조(입사 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생활관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
3. 법정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4. 휴학중인 자 또는 등록 미필자
5.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부적당하다고 관장단에서 판단된 자

제11조(입사생 선발) ①입사를 원하는 자는 입사신청 기간 내에 입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원거리 거주자
2. 신입생 우선
3. 재입사자는 지난 학기 경건훈련 결과를 입사기준에 반영한다.
4. 입사 등록 후의 결원 보충을 위해 입사후보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12조(입사 등록) ①입사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후, 소정의 서류(주민등록초본, 결핵검사서, 입사기록부(소정양식), 서약서(소정양식), 사역증명서 또는 교회 주보)를 구비하여 입사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미등록자는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방배정은 관장단과 임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며, 관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호실을 옮기지 못한다.

제13조(입사 기간) 입사 기간은 1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외출 및 외박) 입사생이 외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후 11시까지 귀관해야 하며, 외박은 사전에 외박계를 제출하여 부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관내 외부인 출입금지) 관내의 외부인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며 면회는 관외에서 해야 한다.

제16조(취사금지 및 화기반입 금지) 생활관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지한다.

1. 관내로의 화기반입은 일체 불허하며 생활관내에서 적발된 일체의 화기는 관장이 압수한다.
2. 관내에서의 취사행위는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 일체 금한다.
3. 1호의 화기라 함은 전열기구 일체와 석유류 및 가스류 사용 기구 일체 및 전기장관 등을 말한다.

제17조(퇴사 및 입사비 반환) ①입사생이 퇴사를 하고자 할 때는 퇴사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입사비 반환은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미만은 70%,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은 40%,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20%를 반환하고 3개월 이상 될 경우에는 입사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자신의 과오나 벌점 누락으로 인한 퇴사시에는 입사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8조(퇴사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장단에서 퇴사를 결정하여 퇴사조치를 할 수 있으며, 퇴사조치를 받은 자는 3일 이내에 퇴사해야 한다.

1.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
2. 경건훈련에 불성실한 자
3. 생활관의 제 규정을 위반한 자

4. 생활관 수칙을 위반하여 벌점이 퇴사기준에 도달한 자(시행수칙 및 벌점표 참고)
5. 전염성 및 정신질환에 감염된 자
6. 기타 생활관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9조(기타 사항)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생활관 수칙 및 벌점표에 따르며, 생활관 수칙 및 벌점표에도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관장단의 판단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20조(생활관의 운영책임) 생활관의 운영책임은 학기중에는 생활관장이, 방학중에는 대관을 포함한 업무를 총무처에서 담당한다. 단, 방학중 학생이 생활관 거주시 총무처장과 함께 협의한다.

제21조(지침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생활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위원회를 통과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